

#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동의 기준 운영안

## I. 관련 근거

1. 보험업감독규정 제9-20조(보험회사의 의무)
2. 손해사정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제 2019-5차 생보협회 이사회 의결 안건)

## II.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동의 기준

### 1. 손해사정사 자격 요건

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 관련 법령 및 규정 상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다음 아래의 서류를 통하여 입증 해야 하고, 손해사정 협회 공시 내용을 통해 공시정보가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 ①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종별 손해사정사/손해사정사업자 등록증 사본 제출
- ② 손해배상보장예탁증서/인허가보증보험증권 사본 제출
- ③ 선임동의 요청서 제출
- ④ 손해사정협회를 통한 아래 항목의 공시정보가 확인되어야 한다.

가. 손해사정사 교육 이수여부(확인 불가 시 별도 수료증 사본 제출 가능)

나. 대표자, 손해사정사, 사업자 등록번호, 영위종목 등 필수 공시 항목

다. 손해사정업자 및 소속 손해사정사의 감독기관/협회 징계 사항 항목

### 2. 손해사정업무 수행 능력

손해사정 업무 수행을 위한 인적/물적 업무 인프라, 업무능력(신속성/정확성/민원관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별표1에서 정한 고객 선임손해사정사 평가기준에 충족함을 확약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를 제출한다. 단, 필요 시 협의 또는 입증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3. 손해사정사의 법령 준수 여부

보험업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2의 보험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 및 손해사정사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독립 손해사정사의 금지 행위 또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형법(보험사기), 변호사법(화해, 중재) 등 건전한 금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선임 동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①보험사기특별법·형법(보험사기)·변호사법(화해)·보험업법 등 보험업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경우
- ②소비자에게 민원 유발 이력 및 과다, 허위 청구에 개입하거나 손해사정사 제출 없이 청구 및 심사 절차에 개입한 이력이 있는 경우
- ③보험업법의 손해사정사 보정의무를 해태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지급 기일을 지연한 이력이 있는 경우
- ④손해사정사의 손해액 산정시 손해사정사의 고의/과실로 보험회사 또는 소비자의 불이익을 초래한 이력이 있는 경우
- ⑤불합리한 조사절차, 부주의한 고객 안내 등으로 민원이 발생한 경우

- ⑥보험회사 동의 규정에 따라 선임 후 이면 계약을 하거나 보험금 부지급 건을 재수임 하는 등 불공정 손해사정의 우려가 있는 경우
- ⑦보험사기 특별법 및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보험사기 행위의 조사,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 ⑧변호사 사무장과 손해사정사를 겸임하는 경우로서,보험금 부지급 처리 후 사건을 알선 또는 중개하거나 재수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III. 청구사유별 동의 기준 적용 범위

청구사유	동의 기준
단독 실손 외	II.항의 1,2,3 항목의 수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동의 여부 판단
단독 실손	II.항의 1,3 항목의 수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동의 여부 판단 II.항의 2항목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손해사정모범규준 8조 실손 담보 특례)

### IV.보수 기준

1. 독립손해사정사 선정 동의 기준에 따라 보험금 청구권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실손보험에 관한 손해사정업무를 진행하고 정정/보정이 완료된 조사보고서가 제출된 경우에 한하여 별표3.보수기준표에 근거하여 독립손해사정사에게 지급합니다.
2. 국제청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경우이거나 불합리한 보수를 요청하는 경우 선임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위 동의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르며,선임 요청 동의에 따른 손해사정업무 절차는 한국손해사정사회 업무 매뉴얼에 따라 진행합니다.**

[별표 1] 고객 선임 손해사정사 평가 기준

평가내용	평가기준	입증서류	비고
인적 능력	3년 이상의 독립손해사정사 경력자(4종 또는 신체손사)	손해사정증등록증사본	업무정확성
	조사 지역이 청구병원 기준 200KM 이상 초과하지 않는 경우.(단순 건 및 지점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제외)		업무신속성
업무능력	보험사 고객 선임 손해사정 수임건수 10건 이상	손해사정업무 위임계약서	업무정확성&민원
개인정보	사무실 책상 등에 대한 출입관리 통제 및 안전한 잠금장치의 설치,CCTV 설치 등	개인정보 입증서류	물리적조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윤리 의식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서약서	관리적조치
	개인신용정보가 이용 목적 달성 등으로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없이 파기하고 이를 회사에 보고	개인정보파기확인서	기술적조치

- 당사 위탁손해사정 수준에서 최소한의 업무 수행능력 평가로 평가 항목 중 1개 이상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동의 불가

[별표 2] 손해사정 관련 주요 법규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보험업법	<p><b>제102조의 3(보험 관계 종사자의 의무)</b>                      보험회사의 임직원,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손해사정사,그 밖에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금을 취득할 자,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아니한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li> <li>2.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금을 취득할 자,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li> </ol>
	<p><b>제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b>                      ③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계약자,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며,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li> <li>2. 업무상 알게 된 보험계약자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li> <li>3.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손해사정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li> <li>4.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사정업무를 지연하거나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손해액 또는 보험금을 산정하는 행위</li> <li>5.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이미 제출받은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나 손해사정과 관련이 없는 서류 또는 정보를 요청함으로써 손해사정을 지연하는 행위</li> <li>6. 보험금을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li> <li>7. 그 밖에 공정한 손해사정 업무의 수행을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li> </ol>
보험업법 시행령	<p><b>제99조(손해사정사 등의 의무)</b>                      ③보험업법 제189조 제3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등록된 업무 범위 외의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li> <li>2. 자기 또는 자기와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li> <li>3. 자기와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li> </ol>
보험업 감독규정	<p><b>제9-14조(독립손해사정사의 금지행위)</b>                      ①독립손해사정사 또는 독립손해사정사에게 소속된 손해사정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보험금의 대리 청구 행위</li> <li>2. 일정보상금액의 사전약속 또는 약관상 지급보험금을 현저히 초과하는 보험금을 산정하여 제시하는 행위</li> <li>3. 특정변호사,병원,정비공장 등을 소개,주선 후 관계인으로부터 금품 등의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li> <li>4. 불필요한 소송,민원유발 또는 이의 소개,주선,대행 등을 이유로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li> <li>5. 사건중개인 등을 통한 사정업무 수임행위</li> <li>6. 보험회사와 보험금에 대하여 합의 또는 절충하는 행위</li> <li>7. 그 밖에 손해사정업무와 무관한 사항에 대한 처리 약속 등 손해사정업무 수임유치를 위한 부당행위</li> </ol>

[별표 3] 보수기준표(2022.04.22일 기준 당사 위탁 손해사정업체 보수 기준)

구분	기본수수료	제증명료	교통비	총액	비고
단순	160,000원	실비	12,000원	172,000원	의료기관 1곳 방문
일반	250,000원		25,000원	275,000원	의료기관 2곳이상 방문

\*조사 건 구분 기준 - 의료기관 방문횟수(고객면담 기본),자문센터 통해 의료자문 시행 시 방문 횟수로 인정하지 않음.

\*의료자문 시행 및 제증명료가 과도하게 발생(5만원 이상)되는 경우 선협의 후 진행

**[별표 4]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를 위한 체크리스트**

본 기본 체크리스트는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에 대한 당사 동의 기준 충족 여부를 명확히 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아래 항목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구분	항목	해당여부		제출서류
1. 손해사정사 자격요건	금융감독원 등록여부 한국손해사정사회공시	<input type="checkbox"/> 등록 <input type="checkbox"/> 공시	<input type="checkbox"/> 미등록 <input type="checkbox"/> 미공시	손해사정업등록증사본
	손해배상예탁금 인허가보증보험	<input type="checkbox"/> 예탁 <input type="checkbox"/> 가입	<input type="checkbox"/> 비예탁 <input type="checkbox"/> 미가입	손해배상보증예탁증서 인허가보증보험사본
	교육이수여부	<input type="checkbox"/> 이수	<input type="checkbox"/> 미이수	
2. 손해사정업무수행능력 (단독실손제외)	평가기준 충족여부	<input type="checkbox"/> 충족	<input type="checkbox"/> 미충족	필요시 관련 서류 요청
3. 법령준수	보험 관련 법령 위반 여부 이해관계자(선임권자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필요시 관련 서류 요청
4. 불건전영업행위	협회, 감독기관 제제이력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필요시 관련 서류 요청
	민원 등 분쟁 발생이력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5. 보수 기준	당사 보수기준 동의 여부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부동의	

(상기 기본 체크 사항 외 당사 동의 기준 상의 결격 사유나 법령 위반 등의 사실이 있습니까?  있음  없음)

◆ 안내사항

- 가. 보험금 청구권자 또는 선임을 요청한 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사 선임관련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본 체크리스트 및 선임동의 요청서, 그 밖에 손해사정선임에 필요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보험금 청구권자가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선임 관련 의사를 표시하지 않거나, 필수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회사가 위탁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업무를 진행합니다.
- 다. 보험금 청구권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이 있더라도 관계법령에 따른 손해사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거나, 청구서류 심사 만으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 경우, 회사의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에 대한 동의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선임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라. 회사는 선임 요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팩스, 그 밖에 유사한 방법으로 알려 드립니다.
- 마. 당사 보수 기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손해사정 선임 동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바. 보험금 청구권자가 선임 요청한 손해사정사는 ABL생명과 업무 위수탁 관계가 없으므로, ABL생명의 관리 및 감독, 점검을 받지 않습니다.
- 사. 보험금 청구권자가 선임 요청한 손해사정사의 개인정보처리와 관련하여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ABL생명은 관계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상기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받고 이해하였습니다**

작성 일자 :                    년                    월                    일

피보험자 :                    성                    명                    (서                    명)

선임손해사정사 :                    상호 또는 담당자기재 (서                    명)

\* 상기 체크리스트 오기재 또는 허위기재로 인한 모든 책임은 보험금 청구권자 및 선임을 요청한 손해사정사에게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ABL생명의 고객 선임손해사정 요청 건수 및 선임 거부 건수는 홈페이지 ->공시실->정기공시 ->정기경영공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